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89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3. 17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# 1. 제안이유

관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기존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였으나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정비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2. 1. 1. ~ 2022. 1. 21.) 결과: 별도의견 없음
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- 4) 규제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”를 “동장이 위촉하고,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이나 동장”을 “동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생 략)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.	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동장이</u> 위촉하고,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구청장이나 동장은</u> 다음과 같 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이나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 다.	④ <u>동장</u>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 
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 
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 
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
연 락 처

# 현행 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

[시행 2020. 3. 25.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·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0.11.23>

**제2조(통·반의 조직)**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.<개정 2013.5.10>

② 통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정한다.<신설 2004.06.30, 2010.11.23, 2020.3.25.>

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.<개정 2004.06.30, 2010.11.23>

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. 다만,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.<개정 2004.06.30, 2010.11.23>

**제3조(통·반의 명칭 및 구역)**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,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. 통·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4조(통장의 임기)**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04.06.30, 2007.05.23, 2010.11.23, 2020.3.25.>

②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은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통장이 임기 만료 전 사직하거나 1개월 이상 신규 위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.<신설 2020.3.25.>

③ 통장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, 4월 1일, 7월 1일, 10월 1일자로 분기별 위촉하되, 필요 시 매월 1일자로 한다.<신설 2020.3.25.>

**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**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.

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07.05.23, 2010.11.23><개정 2013.5.10>

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<개정 2001.05.09, 2004.06.30, 2010.11.23, 2013.5.10, 2020.3.25>

2.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<개정 2010.11.23>

3. 삭제 <2004.06.30>

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0.11.23, 2020.3.25>

④ 구청장이나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11.23>

1. 타 구역으로 이주하였을 때<개정 2010.11.23>

2.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<개정 2010.11.23>

3.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<개정 2010.11.23>

4.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<개정 2010.11.23>

5의2. 구 시책과 구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<신설 2013.5.10>

6.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<개정 2010.11.23>

**제6조(명예반장)**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.

②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.<개정 1999.09.22, 2000.12.16, 2004.06.30, 2020.3.25>

**제7조(임무)** ① 통·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0.11.23>

1.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<개정 2010.11.23>

2.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,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<개정 2010.11.23>

3.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,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·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<개정 2004.06.30, 2010.11.23, 2017.1.4.>

4. 주민의 거주,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<개정 2004.06.30, 2010.11.23>
  5.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<개정 2010.11.23>
  6. 보안등,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<개정 2010.11.23>
  7. 각종 사건·사고 보고와 풍·수해, 제설 등 지원<개정 2010.11.23>
  8.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<개정 2010.11.23>
  9. 지방세·과태료·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<개정 2010.11.23>
  10. 해당 통·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<개정 2010.11.23>
  11.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(전시에만 해당함)<개정 2010.11.23>
  12. 전락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(전시에만 해당함)<개정 2010.11.23>
  13.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<개정 2010.11.23>
-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·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0.11.23>

**제7조의2(통장교육 등)**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는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 다만,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20.3.25>

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.<신설 2010.11.23><개정 2020.3.25>

**제7조의3(비밀유지)** 통·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<신설 2010.11.23><개정 2013.5.10>

**제8조(반상회)**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.<개정 2010.11.23, 2020.3.25>

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<개정 2010.11.23>

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

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. 다만,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개정 2000.12.16, 2010.11.23>

**제9조(통·반장회의)**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·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. 다만,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개정 2010.11.23>

**제10조(편의제공)** ① 통·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<개정 2010.11.23>

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신설 2013.5.10>

**제11조(실비수당등)**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,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.<개정 2010.11.23, 2017.1.4.>

-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0.11.23>
- ③ 통·반장에게는 구정홍보, 시찰,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통·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, 사업은 별표와 같다.<신설 2004.6.30><개정 2007.05.23, 2010.11.23>

**제12조(시행세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(제35호, 1995.03.0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제98호, 1995.10.04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236호, 1999.09.22)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제2호를 삭제하고, 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입기관란의 “동장”을 각각 “동장(단, 시흥1동장은 제외)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중 “동장”을 “동장(단, 시흥1동은 제외)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 제3호중 “한 한다.”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“단,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.”

④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3항중 “동사무소”를 “동사무소 (단, 시흥1동사무소는 제외)”로, “동장”을 “동장(단,시흥1동장은 제외,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부칙 (제293호, 2000.12.16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에서 ②까지 생략

③ 서울특별시금천구통·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동장(단,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중 “동장(단, 시흥1동장은 제외)”을 “동장”으로 한다.

④에서 ⑧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(제310호, 2001.05.0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398호, 2004.06.30)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다만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통장의 임기등에 관한 경과조치) 2004년 10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1943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직에 위촉된 날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한다.

부칙 (제495호, 2007.05.2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585호, 2009.07.1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626호, 2010.11.2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737호, 2013.5.1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897호, 2017.1.4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1089호, 2020.3.25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**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**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